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에 2024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국세 조세규범과를 신설하여 디지털세 등 새로운 국제조세 기준 수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2023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혁신조달기획과를 신설하여 공공조달이 민간부문 기술혁신에 기여하는 조달정책 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기획재정부의 4급 또는 5급 정원 1명을 4급으로 조정하여 재배정하는 한편,

총사업비 관리 전문성 강화 및 협의기간 단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복잡한 세법 해석 기능을 강화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채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연기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미국과의 환율 관련 협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재정집행관리과와 경제협력기획과의 평가기간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2년 2월 28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며, 재정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두는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2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업

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두는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까지로 2년 연장은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제29호”를 “제29호까지 및 제32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6호 중 “협상”을 “협상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제6호 중 “업무”를 “업무의 총괄”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국제조세제도 및 국제적 조세협력”을 “국제조세제도”로 한다.

8. 외국투자자와의 조세협력에 관한 사항

제12조제4항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5호) 중 “조달제도”를 “정책수립 및 조달제도”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계약관련 예규의 입안·해석 및 운용
- 4. 다른 중앙관서 소관 계약 관계법령의 제정·개정 협의
- 9. 조달청 및 다른 중앙관서의 계약 세부기준 제·개정 협의
- 10. 공공기관 계약특례에 관한 협의
- 11. 전문가가격조사기관 등록 및 관리·감독

제15조제4항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1명**”을 “**1명)**, 연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으로 한다.

제25조를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25조) 제3항 중 “**2021년 2월 28일**”을 “**2022년 3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021년 2월 28일**”을 “**2023년 2월 28일**”로 한다.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신국제조세규범과) ①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행정기관의 조직

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4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국제조세규범과를 둔다.

② 신국제조세규범과에 과장 1명을 두고,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중 디지털경제에 관한 과세문제(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 및 국제 최저한세 도입 등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디지털경제 과세”라 한다)에 관한 업무
2.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중 디지털경제 과세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3. 디지털경제 과세와 관련된 외국과의 협정 제·개정 및 그 협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해석 및 상호합의
4. 디지털경제 과세와 관련된 외국과의 협정에 관한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5. 그 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업무 중 새로운 국제조세규범 수립에 관한 사항

④ 신국제조세규범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26조(혁신조달기획과) ① 기획재정부 국고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혁신조달기획과를 둔다.

② 혁신조달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고,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달 정책의 수립·총괄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의 입안·해석 및 협의
3. 전자조달에 관한 법령의 입안·해석 및 협의
4.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획 및 조정
5. 조달 관련 성과평가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6. 중장기 조달 정책방향 및 공공조달종합계획의 수립
7.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운영
8. 조달 업무에 대한 지도·교육
9. 조달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10. 정부조달업무의 전자화에 관한 정책·제도의 기획
11. 조달사업법령에 따른 조달청 세부기준 제·개정 협의
12.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13.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운영
14. 그 밖에 공공조달 정책 및 혁신에 관한 사항

④ 혁신조달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별표 1 중 총계 “1,051”을 “1,057”로 하고, 일반직 계 “1,041”을 “1,047”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1”을 “20”으로 하고,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농업사무관·환경사무관·공업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65”를 “72”로 하며,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23”을 “24”로 하고, 행정서기 “48”을 “47”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1,052”를 “1,058”로 하고, 일반직 계 “1,042”를 “1,048”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1”을 “20”으로 하고,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농업사무관·환경사무관·공업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66”을 “73”으로 하며,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23”을 “24”로 하고, 행정서기 “48”을 “47”로 한다.

별표 4의 조직 2)의 평가기간란 및 같은 표 조직 6)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2월 28일”을 각각 “2022년 2월 28일”로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제25조 관련)”을 “(제27조 관련)”으로 하고, 2. 제25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1년 2월 28일) “2021년 2월 28일”을 “2022년 3월 31일”로 하며, 3. 제25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1년 2월 28일) “2021년 2월 28일”을 “2023년 2월 28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의 존속기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4의2 제3호의 정원 1명(4급 1명)은 2023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3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정원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정원 1명으로 본다.

[별표 4]

기획재정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3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경제구조개혁국 일자리경제지원과	5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7급 1명)	2021년 9월 30일까지
2)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과	2명 (4급 1명, 5급 1명)	2022년 2월 28일까지
3) 공공정책국 공공혁신심의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1년 9월 30일까지
4) 공공정책국 공공혁신과	4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2021년 9월 30일까지
5) 공공정책국 윤리경영과	6명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2021년 9월 30일까지
6) 대외경제국 경제협력기획과	3명 (4급 1명, 5급 2명)	2022년 2월 28일까지
7) 예산실 정보통신예산과	6명 (4급 1명, 5급 4명, 6급 1명)	2022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의2]

기획재정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6항, 제25조제4항, 제26조제4항 관련)

1.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존속기한: 2022년 6월 30일)

총계	22
일반직 계	22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농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농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공업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6
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 관세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통계주 사보	1

2. 신국제조세규범과(존속기한: 2024년 2월 28일)

총계	3
일반직 계	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농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공업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
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 관세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통계주사 보	1

3. 혁신조달기획과(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별표 5]

기획재정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7조 관련)

1. 제25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사무관	2

2. 제25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3월 31일)

총계	3
일반직 계	3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농업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3. 제25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농업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세제실) ① ~ ③ (생략)	제11조(세제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22호부터 <u>제29호</u> 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 ----- ----- <u>제29호</u> 까 지 및 제32조제4항제1호부터 제 <u>5호</u> ----
⑤ · ⑥ (생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세제실에 조세정책과 · 조세특례제도과 · 조세분석과 · 조세법령운용과 · 소득세제과 · 법인세제과 · 금융세제과 · 국제조세제도과 · 재산세제과 · 부가가치세제과 · 환경에너지세제과 · 관세제도과 · 산업관세과 · 관세협력과 및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를 두되, 각 과장은 <u>부이사관</u> 또는 <u>서기관</u> 으로 보한다.	⑦ ----- ----- ----- ----- ----- ----- ----- <u>부이사관</u> · <u>서기관</u> 또는 <u>기술서기관</u> ----- -----.
⑧ 조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외국과의 조세조약 및 국가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6. ----- -----

협정 체결 및 개정 <u>협상</u> 7. ~ 12. (생략) ⑨ ~ ⑭ (생략) ⑮ 국제조세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와 관련된 <u>업무</u> 7. (생략) 8. <u>외국 조세제도 현황의 조사</u> · 분석 9. 그 밖에 <u>국제조세제도 및 국제적 조세협력에 관한 사항</u> ⑯ ~ (생략) 제12조(경제정책국) ① ~ ③ (생략) ④ 경제정책국에 종합정책과 · 경제분석과 · 자금시장과 · 물가정책과 · 정책기획과 및 거시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u>부이사관 또는 서기관</u>으로 보한다. ⑤ ~ ⑩ (생략)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① (생략)	----- <u>협상 총괄</u> 7. ~ 12. (현행과 같음) ⑨ ~ ⑭ (현행과 같음) ⑮ ----- -----. 1. ~ 5. (현행과 같음) 6. ----- ----- <u>업무의 총괄</u> 7. (현행과 같음) 8. <u>외국투자자와의 조세협력에 관한 사항</u> 9. ----- <u>국제조세제도</u>----- ----- ⑯ ~ (현행과 같음) 제12조(경제정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① (현행과 같음)
--	---

② 경제구조개혁국에 경제구조 개혁총괄과, 일자리경제정책과, 일자리경제지원과, 인구경제과 및 복지경제과를 두되, 각 과장은 <u>부이사관 또는 서기관</u>으로 보한다.	② ----- ----- ----- ----- -- <u>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국고국) ① ~ ③ (생략)	제14조(국고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고국에 국고과 · 국유재산 정책과 · 계약정책과 · 국채과 · 국유재산조정과 및 출자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u>부이사관 또는 서기관</u>으로 보한다.	④ ----- ----- ----- ----- <u>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
⑤ · ⑥ (생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계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설></u>	3. <u>계약관련 예규의 입안 · 해석 및 운용</u>
3. (생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4. <u>정부조달사업제도에 관한 정책의 기획</u>	4. <u>다른 중앙관서 소관 계약 관계법령의 제정 · 개정 협의</u>
5. 정부조달시장의 대외개방 관	6. -----

련 <u>조달제도의 운영</u>	-- <u>정책수립 및 조달제도</u>--- -----
6. <u>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u>	<삭 제>
7. <u>정부조달업무의 전자화에 관한 정책·제도의 기획</u>	<삭 제>
<신 설>	9. <u>조달청 및 다른 중앙관서의 계약 세부기준 제·개정 협의</u>
8.·9. (생 략)	7.·8.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신 설>	10. <u>공공기관 계약특례에 관한 협의</u>
<신 설>	11. <u>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 및 관리·감독</u>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15조(재정혁신국) ① ~ ③ (생 략)	제15조(재정혁신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재정혁신국에 재정전략과·지출혁신과·재정제도과·재정건전성과·재정정보과 및 참여예산과를 두되, 각 과장은 <u>부이사관 또는 서기관</u>으로 보한다.	④ ----- -----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17조(국제금융국) ① ~ ③ (생 략)	제17조(국제금융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제금융국에 국제금융과 · 외화자금과 · 외환제도과 · 금융협력과 및 다자금융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 ⑨ (생략)

제18조(대외경제국) ① (생략)

② 대외경제국에 대외경제총괄과 · 국제경제과 · 통상정책과 · 통상조정과 · 경제협력기획과 및 남북경제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⑨ (생략)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① (생략)

② 개발금융국에 개발금융총괄과 · 국제기구과 · 개발협력과 및 녹색기후기획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⑥ (생략)

④ -----

-----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18조(대외경제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② (생략)
③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
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
명),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
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
무원으로 임용한다.

<신 설>

제20조(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명), 연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

제25조(신국제조세규범과) ① 기
획재정부 세제실에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4년 2월 2
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
로 신국제조세규범과를 둔다.
② 신국제조세규범과에 과장 1
명을 두고,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
정위원회 중 디지털경제에 관
한 과세 문제(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 및 국제 최저한세
도입 등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에서 “디지털경제 과세”라 한

<신 설>

다)에 관한 업무

2.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중 디
지털경제 과세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3. 디지털경제 과세와 관련된
외국과의 협정 제·개정 및
그 협정에 관한 제도의 기획
·입안, 해석 및 상호합의

4. 디지털경제 과세와 관련된
외국과의 협정에 관한 국세청
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통
칙의 심사

5. 그 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
ECD) 재정위원회 업무 중 새
로운 국제조세규범 수립에 관
한 사항

④ 신국제조세규범과에 두는 공
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
2와 같다.

제26조(혁신조달기획과) ① 기획
재정부 국고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
7조의3에 따라 2023년 2월 28일
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혁
신조달기획과를 둔다.

② 혁신조달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고,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달 정책의 수립·총괄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의 입안·해석 및 협의
3. 전자조달에 관한 법령의 입안·해석 및 협의
4.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획 및 조정
5. 조달 관련 성과평가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6. 중장기 조달 정책방향 및 공공조달종합계획의 수립
7.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운영
8. 조달 업무에 대한 지도·교육
9. 조달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10. 정부조달업무의 전자화에 관한 정책·제도의 기획
11. 조달사업법령에 따른 조달청 세부기준 제·개정 협의
12.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u>운영</u> <u>13.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운영</u> <u>14. 그 밖에 공공조달 정책 및 혁신에 관한 사항</u> <u>④ 혁신조달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u>
<u>제25조(한시정원) ① (생략)</u> ② 삭제 ③ 재정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획재정부에 둔다.</u> ④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획재정부에 두며, 별표 5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농업사무관</u>	<u>제27조(한시정원) ① (현행과 같음)</u> ③ ----- ----- ----- ----- <u>2022년 3월 31일</u>----- ----- ---. ④ ----- ----- ----- ----- <u>2023년 2월 28일</u>----- ----- ----- -----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은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으로 충원해야 한다.	----- ----- -----.
---	-----------------------------------